

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006 관련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9월 14일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예외사유를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, 의원입법절차에 비해 긴 입법예고기간과 조례규칙심의회 등 추가적인 절차가 요구되는 집행기관의 입법과정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의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자치법규 시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례안 부칙 중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로 수정함.

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 중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를 “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”을 “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